



: 2019-02-25

부 산 고 등 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나5749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홍민

피고, 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2. C

3. D

4. 주식회사 E

5.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배경렬

제 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5가합3436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2. 20.

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019-02-25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유지하면서 이와 선택적으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¹⁾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각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해상화물운송업, 기계설치업, 공학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선박 및 산업기계 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다.

2)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직원이며, 피고 F은 피고 E의 부사장이다.

나. 이 사건 설계도면 및 이 사건 크레인의 제작 경위 등

1)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이라 한다.



1) 원고는 2007. 9. 3.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해상선박용 2,000t 플로팅크레인(Floating Crane) 'H'(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 신규 건조공사를 위한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 한다) 등을 6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계약(갑 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용역의 대상 및 범위)

1. 용역명: 2000톤급 해상크레인 신규건조 설계용역

제6조 (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1. G은 원고가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2. G은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원고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G의 요구 내용을 수용하여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7조(계약의 양도 및 변경)

1. G과 원고는 상대방의 승낙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5조(저작권의 보호)

이 계약과 관련한 설계도서의 소유권(저작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제16조(비밀의 보장)

G과 원고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 기술정보 또는 영업에 관련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여선 아니 된다.

2) 원고는 2007. 11. 12.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에 이 사건 크레인 중 바지(Barge) 부분에 관한 설계를 3억 원에 맡기는 설계계약(을 4, 5호증)을 체결하였다. 위 설계계약서 7조(지적 재산권/라이선스비용)에는 "기본 설계와 관련된 모든 도면 파일이 최종 도면 제작의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되나, 기본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K에 속한다. 원고는 K의 동의 없이 기본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설계도면을 제작하여 2009. 3. 경 G에 공급하였고, 피고 E는 G로



부터 이 사건 크레인의 제작을 의뢰받아 이 사건 설계도면에 따라 이를 제작하였다.

나. 피고 E의 'T' 해상크레인의 제작 등

- 1) 피고 E는 2011. 5. 31. 주식회사 J과 'T' 해상크레인(이하 'I 크레인'이라 한다)의 제작 및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19. 피고 B에 I 크레인 기본설계도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 2) 피고 E는 이 사건 크레인의 제작과정에서 입수한²⁾ 이 사건 설계도면 캐드 파일을 피고 B에 제공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설계도면 캐드 파일을 참조하여 2012. 2. 경 I 크레인 기본설계도를 제작하였다.

다. 원고의 형사고소 및 피고들에 대한 제1심 형사재판 결과

- 1) 원고는 2013. 11.경 부산해양경찰서에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물이자 영업비밀인 이 사건 설계도면 캐드 파일을 무단으로 유출 및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였다.
- 2)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4. 3. 피고들을 이 사건 설계도면을 도용하여 I 크레인 기본설계도를 제작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 3) 창원지방법원은 2018. 6. 14. 이 사건 설계도면에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5고단712),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창원지방법원 2018노157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 9호증, 10호증의 6, 16, 을 2, 4, 5호증의

2) 원고는 G의 요청으로 이 사건 크레인의 제작업체인 피고 E에 이 사건 설계도면 캐드파일을 직접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E는 이 사건 크레인의 제작과정에서 G로부터 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제공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피고 E가 이 사건 크레인의 제작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이 사건 설계도면 캐드 파일을 입수한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E의 부사장인 피고 F은 G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의 설치를 의뢰받아 공사를 수행하던 중 원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설계도면의 캐드 파일 등을 무단 유출하여 피고 B에 제공하였다. 피고 B의 대표이사 피고 C과 설계팀장 피고 D은 위 파일 등을 무단으로 복제 및 도용하여 이 사건 크레인과 매우 유사한 I 크레인의 설계도면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 C, D, F이 이 사건 설계도면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한 것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이므로, 피고 C, D, F은 직접적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은 피고 C, 피고 D의, 피고 E는 피고 F의 각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 대금 6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제15조에는 이 사건 설계도면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와 G의 위와 같은 약정만으로 이 사건 설계도면이 곧바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서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의 해석을 통하여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8호는 '지도 · 도표 · 설계도 · 약도 · 모형 그 밖의 도형 저작물'을 저작물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



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이다. 이러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 484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나 시스템의 연결 관계를 표현하는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그 장치 등을 구성하는 장비 등이 달라지는 경우 그 표현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고, 저작권법은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술 구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 표현에 대하여 동일한 기능을 달리 표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참조).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10호증의 4, 6, 11, 13,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설계도면은 해상크레인 설계 및 제작 등의 작업이나 공사와 관련한 기술 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도면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설계도면과 피고 B이 제작한 기본설계도는 각각 용도와 규격이 유사한 2,000t급 해상크레인을 제작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미리 약속



된 특정의 기호 등을 사용하여 ① 전체 형상, ② 형상의 크기(치수), 각도 ③ 형상을 구성하는 재료, ④ 형상을 구성하는 다수 부품들이 표현된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② ① 모든 해상크레인은 짚 봄(Jib Boom), 바지(Barge), 백타워, 후크와 로프 등 그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동일한 점, ② 원고가 설계한 이 사건 해상크레인도 그보다 먼저 제작된 다른 회사의 해상 크레인(중국의 L, M 등)과 외형상 유사한 점, ③ 원고는 G이 요구한 사양(인양능력 2,000t 이상, 인양 높이 80m 이상, 인양 거리 30m 이상, 사용조건: 주요작업 중형조선소 선체 블록 작업, 인양 및 회전 가능 조건, 해상교량 설치작업, 얇은 수심 접근 작업 가능 조건) 및 설계 기본안(단봉 형, 500t HOOK × 4세트 배치, 대형화물 인양작업을 위한 전·후·좌·우 HOOK 별립 가능)에 맞추어 이 사건 설계도면을 작성한 점, ④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설계도면 중 크레인 외 형 부분은 이미 제작된 다른 크레인을 참조하여 작성한 점, ⑤ 바지 부분은 K이 설계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발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설계도면에 해상크레인 설계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과 구별되는 독창적 표현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③ 원고가 제출한 갑 8호증(감정서)은 이 사건 설계도면과 피고 B이 제작한 기본 설계도의 유사성을 감정한 결과 양도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 설계도면의 창작성에 관하여는 아무런 의견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모든 해상크레인의 전체적인 형상이 유사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기능 확보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작성자의 창조적인 개성이 발휘될 여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구조부의 단면이나 치수, 절점의 개수 또는 인양능력·방식 또는 형식 등은 표현이 아닌 기능 내지 기술에 속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능적인 부분을 달리



표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창작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기능적인 부분에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었다면 특허권으로서, 완성된 제품의 형태가 독특하다면 디자인권으로서의 보호 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설계도면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을 하거나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을 설정한 사실도 없다(을 1호증).

라) 따라서 이 사건 설계도면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등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설계도면 캐드 파일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1호 (차)목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설계도면 캐드 파일을 유출 및 사용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C, D, F은 직접적인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피고 B은 피고 C, 피고 D의, 피고 E는 피고 F의 각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대금 6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쟁점별 판단

가) 이 사건 설계도면 캐드 파일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



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여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설계도서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G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원고의 비밀, 기술정보, 또는 영업에 관련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여선 아니 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10호증의 2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G의 요청으로 이 사건 설계도면 캐드 파일을 피고 E에 제공하였고, 해상크레인 제작 완료 이후에도 이를 회수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설계도면 캐드 파일을 작성 책임자의 컴퓨터에 저장해두었을 뿐 비밀로 분류하여 회사의 컴퓨터에 따로 보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상대로 보안교육을 실시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설계도면 캐드 파일이 원고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019-02-25

(3)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설계도면 캐드 파일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설계도면 캐드 파일에 대하여 비밀관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설계도면 캐드 파일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 여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규정은 부정경쟁방지법이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것으로서 그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시행되었다.

(2) 살피건대, 피고 E가 2011. 9. 19. 피고 B에 I 크레인의 기본설계도 제작을 의뢰하면서 이 사건 설계도면을 제공한 사실, 피고 B이 2012. 2. 경 I 크레인의 기본설계도를 제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들이 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이후에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그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피고 B의 I 크레인의 기본설계도 작성과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도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총 11개월의 기간을 들여 이 사건 설계도면을 완성하였다. 피고들은 I 크레인



의 설계도면을 제작하면서 무단으로 이 사건 설계도면을 이용함에 따라 3개월 만에 제작을 완료하였고, 결국 그 제작 기간을 8개월 상당 단축하는 이득을 보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액이자 피고들의 이득액에 해당하는 477,412,376원(= 원고가 들인 총 설계비용 656,442,017원 × 피고들이 단축한 기간 8개월/11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 등과 같이 법률에 정해진 엄밀한 의미에서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등 참조).

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생긴 현실의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가해자에게 이를 배상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받은 불이익을 보전하여 불법행위가 없었던 때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재산상 손해는 침해되는 권리 또는 이익이나 행위형태에 관계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가정적 재산상태)와 침해행위로 생긴 현실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그러므로 권리나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하더



라도 권리나 이익의 귀속 및 내용에 사실상 불이익한 영향이 없는 때에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손해의 발생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적으로 기초 지우는 요건이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가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하고,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 과학적 증명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참조).

다) 먼저 이 사건 설계도면 캐드 파일이 원고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설계도면 캐드 파일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설계도면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G이 요구한 사양에 맞추어 이 사건 크레인의 제작이라는 특정한 용도를 위해 제작되었다.

② 이 사건 설계도면에 나타난 해상크레인의 형태가 이미 제작된 다른 해상크레인의 형태와 비교하여 독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설계도면에 나타난 그 구조부의 단면이나 치수, 절점의 개수 또는 인양능력·방식 또는 형식 등에 있어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설계도면을 작성하면서 직원들의 인건비 외에 별도의 개발 및 투자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설계용역 이후에도 이 사건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해상크레인의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등 지속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라) 나아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제작한 I 크레인의 기본설계도와 이 사건 설계도면의 기본 구조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분도 있으나, 와이어의 배치와 바지 결선 위치, 후크의 개수 및 위치, 바지선의 앞머리 부분 및 전체적인 선도, 지시선의 표현 등이 다른 사실이 인정되는 등 피고 B이 I 크레인의 기본설계도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설계도면을 일부 참조한 것을 넘어 이를 동일하게 복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이 피고 B이 I 크레인의 기본설계도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설계도면을 참조한 행위가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명백한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설계도면을 이용함으로써 피고 E로부터 의뢰받은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데 약 8개월의 시간을 단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오히려 갑 10호증의 10, 12,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E로부터 생산 제작도를 제외한 기본설계도의 작성만을 의뢰받음에 따라 용역 수행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기본설계도만을 작성하는 데에도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이 이 사건 크레인과 발주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사양도 일부 다른 I 크레인의 설계 및 제작을 통해 얻은 영업 이익이 원고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지도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I 크레인 설계 및 제작으로 원고에게 실제적인 영업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바)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 2019-02-25

2)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의적(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비밀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예비적 청구(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 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유팽열

판사 유정우

판사 이 성